

붙임 1)

회원 보수교육 강사 자격 및 연제 제출 요령

1. 회원 보수교육 강사 자격

가. 치과의사 회원보수교육 강사자격을 충족하는 자

협회 정관 제9조(회원의 의무)를 준수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가진 자

- 1) 치과대학 및 치의학전문대학원의 전임강사 이상으로 만 2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자
- 2) 전공의 수련치과병원에서 만 3년 이상 전공의 교육 경력이 인정되는 자
- 3) 치과대학, 치의학전문대학원 및 수련치과병원 외래강사 만 5년 이상 교육경력이 있는 자
- 4) 치과의사로서 치과대학을 졸업한 후 만 12년 이상 경과한 자로서 연제와 관련 전공분야에서 만 5년 이상 경력을 관련분과학회에서 인정한 자
- 5) 기타 대한치과의사협회가 인정하는 자

=> 각 자격요건 중 1개 이상의 조건에 충족되는 자(조건 미 충족 시 승인 불가)

나. 회원 보수교육 규정에 따른 의무를 다한 자

1) 협회 정관 제9조(회원의 의무)

① 회원은 협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가진다.

1. 협회 정관·규정 및 의결사항의 준수의무
2. 소속지부를 통한 입회비·연회비 및 기타 부담금의 납부의무

② 회원은 소속지부를 거쳐 협회에 등록하여야 한다.

=> 협회 연회비 및 부담금 전액이 납부(2022년도 회비까지 완납)되어야 함

미납 회비는 해당 지부를 통해 납부해야 함

(문의처: 각 해당 지부 사무국 / 협회 재무팀 TEL.02-2024-9120)

회원 보수교육 강사 자격 ⇒ 가. 나 항 모두 충족 시 가능

2. 준비서류

- 2023년도 회원보수교육 연제 및 강연초록

3. 신청 기간

- 2022.09.19.(월) ~ 10.31.(월)까지(기한 완료 후 신청 불가)

4. 신청방법

- 가. 협회 홈페이지 내 보수교육 센터(<http://edu.kda.or.kr>) → 개인 회원 로그인 → [보수교육 연제신청] 메뉴를 통하여 연자가 직접 작성 및 신청
- 나. 강사 1인당 강연 연제는 최대 3개까지 제출
- 다. 연제신청서 내 각 연제의 강연내용은 200자 이내로 요약해서 제출
- 라. 연제신청서 내 이력내용은 반드시 3개 이상 교육경력 기재

5. 문의처

- 학술국 TEL.02-2024-9150

2023년도 회원 보수교육 진행 순서

